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1다211754 손해행위취소
원고, 피상고인 원고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외 2인
피고, 상고인 피고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
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. 1. 20. 선고 2019나40390 판결
판 결 선 고 2021. 6. 10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

를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·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·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, 만약 이를 게을리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·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(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3후922 판결,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20다273045 판결 등 참조).

원심은,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피고와 채무자 소외인 사이에 2016. 2. 4.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사천시 (주소 생략)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신한은행 예금 채권만이 존재하며 그 총 합계가 1,665,100,309원이고 소극재산은 1,689,605,995원인데,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예약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.

그런데 기록에 의하면,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. 2. 4. 당시 소외인이 (차량등록번호 1 생략) 스타렉스 차량, (차량등록번호 2 생략) 포터 차량(이하 '이 사건 차량들'이라고 한다)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증거들도 제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.

이러한 소송경과에 더하여 원심은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불과 24,505,686원이 많다는 이유로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점, 소외인의 적극재산에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시켰을 경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

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심으로서는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 관계나 위 차량들의 가액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.

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인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으니,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조재연

 대법관 민유숙

주 심 대법관 이동원

 대법관 천대엽